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1. 6. 14.(월) 10:00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 I.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5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 5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2020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 1. 도시안전국 결산 총괄

##### 가. 도시안전국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11,129,914,000	12,261,177,800	11,551,468,460	94.2%
주 택 과	798,591,000	1,395,046,140	1,006,702,010	72.1%
안전도시과	880,975,000	907,237,800	887,844,200	97.8%
도시계획과	416,000,000	412,464,220	412,464,220	100%
건 축 과	181,437,000	495,941,900	224,804,440	45.3%
공원녹지과	8,852,911,000	9,050,487,740	9,019,653,590	99.6%

##### 나. 도시안전국 세출 총괄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A)	지 출 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금 액	집행률(B/A)
계	41,448,239,870	23,851,518,140	15,811,568,010	1,607,528,252	57.5%
주 택 과	539,412,870	427,710,110	0	83,956,330	79.3%
안전도시과	10,087,986,000	9,577,249,290	187,506,000	233,533,310	95%
도시계획과	4,478,877,000	3,066,817,510	509,802,700	877,795,816	68.5%
건 축 과	467,032,000	372,889,870	50,000,000	27,315,130	79.84%
공원녹지과	25,874,932,000	10,406,851,360	15,064,259,310	384,927,666	40.2%

- 2020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세입결산액은 115억 5,146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94.2%임.
- 2020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지출액은 238억 5,151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752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7.5%임.

#### 다. 집행잔액(불용액)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유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산감	예산집행액	보조금집행잔액
계	41,448,239,870	1,607,528,252	3.88	103,477,490	93,525,650	1,239,488,460	169,858,332
주택과	539,412,870	83,956,330	15.6	11,681,200	0	27,126,990	45,148,140
안전도시과	10,087,986,000	233,533,310	2.3	65,120,800	2,000,000	81,214,710	85,197,800
도시계획과	4,478,877,000	877,795,816	19.6	-	-	855,256,270	21,361,046
건축과	467,032,000	27,315,130	5.84	100,000	0	27,215,310	0
공원녹지과	25,874,932,000	384,927,666	1.49	26,575,490	91,525,650	248,675,180	18,151,346

○ 도시안전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주택과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1,875,000	0	0	1,875,000	0.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200,000	0	0	1,200,000	0.0%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5,500,000	2,582,990	0	1,000,000	47.0%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448,000	0	0	448,000	0.0%
	금천 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 운영	12,180,000	6,090,000	0	6,090,000	50.0%
	공동주택 분양가 분쟁조정 심사위원회 수수료	2,688,000	900,000	0	1,788,000	33.5%
	위법 건축물 정비	2,790,000	1,721,800	0	1,068,200	61.7%
안전도시과	폭염 및 한파관리	96,600,000	47,083,330	0	49,516,670	48.7%
	비상대비 계획 추진	40,720,000	18,676,200	0	22,043,800	45.9%
도시계획과	시흥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1,200,000	35,950,000	34,750,000	250,000	50.5%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10,000,000	3,885,100	-	6,114,900	38.9%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	7,040,000	3,417,100	-	3,622,900	48.5%
	공공디자인 발굴 사업 추진	48,050,000	30,196,300	17,303,700	550,000	62.8%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232,051,000	43,920,000	188,131,000	-	18.9%
	독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301,380,000	142,514,000	138,200,000	8,951,200	47.3%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61,380,000	205,305,460	131,418,000	12,160,366	56.8%
건축과	-	-	-	-	-	

- 도시안전국 집행률 저조사업은 그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2021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도록 세밀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부서별	건수	금 액	사유
계		2	758,700	
전용	안전 도시과	2	758,700	-CCTV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관련 예산 전용(758,700천원)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2020회계연도 도시안전국의 예산전용은 총 2건 7억 5,870만원을 전용하였음.

##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9	15,811,568	11	15,014,134	8	797,434
주택과	-	-	-	-	-	-
안전도시과	1	187,506	-	-	1	187,506
도시계획과	5	509,803	2	269,618	3	240,185
건축과	1	50,000	1	50,000		
공원녹지과	12	15,064,259	8	14,694,516	4	369,743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11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인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도시계획과	독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300,000	273,636	138,200	[집행시기 미도래] '20. 2. 시비 보조금 교부, 사업기간이 차년도까지임
	가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360,000	335,342	131,418	[집행시기 미도래] '20. 2. 시비 보조금 교부, 사업기간이 차년도까지임
건축과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시설비	50,000		50,000	[집행시기 미도래] '20. 11. 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공 원 녹지과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설비	1,387,000	842,484	544,516	[집행시기 미도래] '20. 9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시설비	9,750,000		9,750,000	[연도 내 지출 불가] 사업 후보 대상지에 5개소에 대한 토지구와의 매수 협의 결과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여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움
	꾸러기·소망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500,000		500,000	[집행시기 미도래] '20. 12. 특별교부세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 원인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공원 녹지과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	사무관리비	25,000	13,035	10,000	[집행시기 미도래] 2단계 사업에 대한 특교금이 '20.12월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
		행사운영비	30,000		30,000	
		시설비	1,137,000	466,171	655,000	
		시설부대비	8,000	2,000	5,000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시설비	3,310,000	96,325	3,200,000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8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안전도시과	안전종합 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	전산개발비	757,300	625,020	187,506	사업기간이 8개월로 연내 준공 불가
도시계획과	시흥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0	69,500	34,750	해당용역의 사업기간이 '20.05.26. ~'21.05.25.로서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공공디자인 발굴 사업 추진	시설비	45,000	45,000	17,304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안)에 대한 편리성, 실용성, 안전성에 대한 실물 점검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험제작 과정 반복으로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32,051	232,051	188,131	코로나19로 인한 심의 및 회의 개최 감소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이행을 위한 과업기간 부족
공원녹지과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시설비	1,387,000	842,484	280,622	특별교부금 하반기(8월20일) 교부되어 공사발주 지연
	새재미어린이공원 재조성	시설비	80,000	78,340	30,449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용역	시설비	30,000	26,274	10,510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등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시설비	3,310,000	96,325	48,163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

○ 2020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11건 150억 1,413만 4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8건 7억 9,743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Ⅲ.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중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675,700	1,805,809	7,066,716	5,260,907	5,481,579
재난관리기금	3,675,700	1,805,809	7,066,716	5,260,907	5,481,579

-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36억 7,570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4억 8,157만 9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52억 6,090만 7천원임.

# 관계법령

##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